



#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b>선 람</b>	기관장

제44호      2016. 10. 21(금)

##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6 - 150호 남원 도시계획시설(향교동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1
- 남원시 고시 제2016 - 151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2
- 남원시 고시 제2016 - 152호 남원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3

##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6 - 1310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4

## 예규

- 남원시 예규 제 16호 남원시 직장내 성희롱방지에 관한 예방지침 일부개정지침-----5
- 남원시 예규 제 17호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 일부개정 지침 -----20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6-150호

### 남원 도시계획시설(향교동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6년 10월 21일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한 생태숲복원사업

#### 2.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가. 위 치 : 남원시 향교동 산4-1번지 일원
- 나. 사업면적 : 11,000m<sup>2</sup>
- 다. 사업내용 : 마운딩, 곤충호텔, 전망데크, 파고라 등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
-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구분	행정구역	지 번	지목	면 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성 명	주 소	
합 계				11,000			
1	남원 향교	5-1	체	175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2	남원 향교	6-1	체	80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3	남원 향교	산5-1	체	5,778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4	남원 향교	산3-25	체	2,766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5	남원 향교	산4-1	체	2,201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고시 제2016 - 151호

###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21일

남 원 시 장

####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3	주차장	남원시 동충동 36-7일원	-	증) 1,768	1,768	금회	
신설	34	주차장	남원시 하정동 59-2일원	-	증) 2,682	2,682	금회	

##### 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33	주차장	신설 : 1,768㎡	동충동 터미널 주변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차장을 결정하여 주차난 해소
34	주차장	신설 : 2,682㎡	하정동 예가람길 주변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차장을 결정하여 주차난 해소

#### 2.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결정 지형도면승인 고시도

: 실음생략

남원시 고시 제2016 -15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토지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적 (㎡)
성 명	주 소	시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	
이**	군산시 설림안*길 **, *** **	남원	송동	신평	산46- 3	임야	3,764	3,520
박**	남원시 운봉읍 승전로 ***-**	남원	운봉	가산	산20- 1	임야	73,353	29,350

- 5. 사업기간 : 2016. 10. ~ 2017. 09. 31.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2016-1310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의한 공인 신조 및 폐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남 원 시 장



### □ 공인 신조 등록 [아영면]

- 1. 공인 등록사유 : 민원발급용 인증기 교체
- 2. 공인 등록 일 : 2016. 10. 21.
-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원시아 영면장인 인증기전용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아영면

### □ 공인 폐기 [아영면]

- 1. 공인 폐기사유 : 민원발급용 인증기 교체(인증기 마모)
- 2. 공인 폐기 일 : 2016. 10. 21.
-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11조
-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폐기	남원시아 영면장인 인증기전용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아영면

남원시 직장내 성희롱방지에 관한 예방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10월 21일

남원시 예규 제 16 호

남원시 직장내 성희롱방지에 관한 예방지침 일부개정지침

남원시 직장내 성희롱방지에 관한 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직장내 성희롱방지에 관한 예방지침”을 “남원시 성희롱 예방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로, “직장내”를 “남원시”로 한다.

제2조 중 “시”를 “남원시”로, “(이하”산하기관”이라 한다)의”을 “(이하”시”라 한다)의”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마련, 성희롱 가해자의 무관용의 원칙 천명, 시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 방지 예산확보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

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성희롱예방을”을 “시장은 성희롱 예방을”으로, “관련 고충”을 “고충”으로, “둔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을 “복무담당자를 포함하여 2명”으로,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직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업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 관련부서간”을 “부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련부서”를 “관련 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를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성희롱 예방교육)”을 “(예방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 관련 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당해년도”를 “시장은 매년”으로,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를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법령”을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원인 등으로부터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제6조제2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그밖에”를 “그 밖의”으로, “사항”을 “사항 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해당 부서의 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에게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들에게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방법”을 “방법,”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성희롱 고충의 신청)”을 “(고충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중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해”를 “따라”로, “않은 때에는”을 “않을 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고충상담원은 접수된 사안의 조사·처리를 위하여”를 “성희롱 예방업무 담당과장은 조사과정에서 사안과”로, “요청할”을 “요청 할”로, “협조하여야 한다”를 “응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제1항 중 “받은자를”을 “받은 사람”으로, “자”를 “사람”으로, “등 에 협력하는 자 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은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과 직무상 알게 된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제2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처리할”을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희롱”을 “시장은 성희롱”으로, “남원시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인”을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과 시 소속 직원 중 남원시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장이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구성하며, 해당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의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 할 수 있다.

제14조 중 “조사결과”을 “시장은 조사결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를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를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 명	소속부서				과장	총무국장	부시장

[별지 제2호 서식]

## 성 희 룡 고 충 신 청 서

방문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행정포털 게시판(새올-인사마당)

접 수 일	20 . . .	담 당 자	(서명)		
당 사 자	신 청 인	성 명		소속	
		직 급		성별	
	대 리 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소속	
		직 급		성별	
	행 위 자	성 명		소속	
		직 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 구 사 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		
처 리 결 과					
※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직장내 성희롱방지에 관한 예방지침</u></p> <p>제1조(목적)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u>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u>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이하"산하기관"이라 한다)의 모든 소속직원(남원시장과 고용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u></p> <p>제3조(성희롱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u>성희롱</u>"이란 <u>직원 간에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u></p> <p>제4조(시장의 책무)시장은 <u>성희</u></p>	<p><u>남원시 성희롱 예방지침</u></p> <p>제1조(목적)-----「<u>양성평등기본법</u>」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 -----</p> <p>----- <u>남원시</u> -----</p> <p>----- .</p> <p>제2조(적용범위)-----</p> <p>----- <u>남원시</u> -----</p> <p>----- (<u>이하"시"라 한다</u>)의-----</p> <p>----- <u>사람을</u> ----- .</p> <p>제3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u>성희롱</u>"이란 「<u>양성평등기본법</u>」 제3조제2호에 따른 <u>성희롱</u>을 말한다.</p> <p>제4조(시장의 책무)<u>남원시장(이</u></p>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 (생략)
-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4. (생략)
-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인사·복무 관련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여성 관련 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당해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 등에 관

담당자를 포함하여 2명 -----  
----- 직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  
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 업무-----  
-----.

- 1. · 2. (현행과 같음)
- 3. ----- 부서간 -----  
-----
- 4. (현행과 같음)
- 5. -----  
----- 그 밖의 -----  
---

④ -----  
----- 관련 부서-----  
-----.

⑤ -----  
-----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매년  
-----  
-----  
----- 따른

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시장 혼시  
등의 방법으로 연 1시간 이상  
실시하며, 교육은 각 호의 내용  
을 포함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생략)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신설>

5. 그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  
한 사항

③ 직원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할 경우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④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  
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  
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
2. ----- 발생 시-----  
-----
3. (현행과 같음)
4. ----- 사람에 -----  
-----

5. 민원인 등으로부터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 사항 등

③ 해당 부서의 장은 신규 임용  
된 사람에게 임용된 날부터 2개  
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효  
과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들에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

경우에 여성관련 부서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  
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다. 다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이  
이를 작성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  
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  
· 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  
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  
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  
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  
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  
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  
-----방법,-----  
-----  
-----.

제7조(고충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따른다.

<단서 삭제>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  
-----  
----- 경우에는  
-----  
-----.

② ----- 날부터  
-----  
-----.  
----- 범위-----  
-----.

③ 제1항에 따른-----  
----- 따라-----  
-----  
-----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접수된 사안의 조사·처리를 위하여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 않을 때에 -----  
-----.

④ 성희롱 예방업무 담당과장은 조사과정에서 사안과 -----  
----- 요청 할 -----  
-----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  
----- 받은  
사람을 -----  
----- 사람 -----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

<신 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원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처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간을 분리하는 등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은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과 직무상 알게 된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1조에 따른 -----  
--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토의에 부처 처리하게 할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성희롱 -----  
-----  
위원회-----.

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인과 남원시청 소속 직원 중 남원시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한다.

- 1. · 2. (생 략)
- 3. 기타 성희롱 예방 및 구제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② (생 략)

<신 설>

② ----- 6명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과 시 소속 직원 중 남원시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장이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구성하며, 해당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1. ·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의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의 기피신청이 가

제14조(조사의 종결)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① 시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 전환·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신 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의 종결)시장은 조사결과-----

제15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  
-----  
-----  
-----  
-----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3항에 따른-----  
-----  
-----.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6년 10월 21일

남원시 예규 제 17 호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 일부개정 지침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2, ③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2. 과년도 체납액 인계인수 세부현황

③ 세외수입 체납자 내역

작성자 (인)

확인자 (인)

연번	체납자		회계 과목	납기	체납세액(원)			압류사항		특이 및 특려 사항	공매 의뢰 여부	교부 청구 진행 여부	관허 사업 제한 여부	재산 소유 여부	그 밖의 사항
	성명	생년 월일			계	본세	가산금	압류 일자	압류 물건						

※ 작성요령

1. 엑셀서식으로 시트명 【고액(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으로 작성.
2. 과목은 과목코드가 아닌 “과목명” 기재, 납기는 ‘부과 년/월’ 기재.
3. 체납액은 병기목을 포함한 0/0일 현재 본세액 및 (중)가산금을 ‘원’ 단위로 기재.
4. 압류사항은 압류일자와 물건을 “00년 00월 00일 부동산, 00년 00월 00일 금융자산, 00년 00월 00일 차량” 등으로 기재하되, 부동산과 금융재산, 차량을 중복 압류한 경우에는 모두 기재.
5. 공매의뢰여부는 “공매의뢰일자” 를 기재 - (예) “00년 00월 00일 부동산”
6. 교부청구 진행 여부는 최고서, 낙찰기일통보, 배당기일 통보 등에 따른 최종 교부청구 일자 를 기준으로 ‘배당 00년 00월 00일’ 기재
7. 관허사업 제한여부는 ‘00년 00월 00일 00구 00과 유흥음식업’ 등으로 기재
8. 무재산일 경우에는 ‘재산조회일자’ 를 기재 - (예) 부. 0000년 00월 00일
9. 그 밖의 사항은 연락처(전화, 팩스, 이동통신 등) 및 특이사항 기재